성주군 출산·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9년 월 일 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
성주군의 출생아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어 출산가정에 양육지원금 확대를 통해 출산·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 출산율 저하와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양육 지원금 지원 대상 및 기간 개정(안 제5조제1항제4호)

- 양육 지원 대상 확대(영아→영유아)
- 양육 지원금 지원 기간 확대(12개월→36개월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8조, 제10조

나. 예산조치 : 1,335,000천원(군비 100%)

☞ 1,335,000천원 [737,600(예산) + 597,400(2020년 1차 추경)]

다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

2) 입법예고 : 의견 없음(예고기간 2019. 11. 5.~11. 25.)

3) 규제심사 : 개선사항 없음[기획감사실-11031(2019.11.1.)]

4) 성별영향평가 분석 : 개선사항 없음[가족지원과-44562(2019.10.30.)]

5) 비용추계서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출산·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출산·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6항 중 “영아”를 “영유아”로 한다.
제5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영”을 “영유”로 하고,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“12회”를 각각 “36회”로 한다.
제6조제10항 중 “매월”을 “익월”로 한다.
제10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 (지원대상) ① ~ ⑤ (생 략)	제4조 (지원대상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지원은 지원 대상자가 타 시·군으로 전출하였거나, 해당 영아가 사망한 경우 전출일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단한다.	⑥ ----------영유아----------.
제5조 (지원금액 등) ① 성주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인구증가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 쌍태아 이상일 경우 출산 순위에 따라 각각 차등 지원한다.	제5조 (지원금액 등) ① -----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영아 양육 지원금	4. 영유----------
가. 첫째 자녀: 매월 10만원씩 12회	가. ---------- 36회
나. 둘째 자녀: 매월 20만원씩 12회	나. ---------- 36회
다. 셋째 자녀: 매월 50만원씩 12회	다. ---------- 36회
라. 넷째 자녀 이상: 매월 70만원씩 12회	라. ---------- 36회
5. (생 략)	5. (현행과 같음)
②·③ 삭 제	
④·⑤ (생 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
제6조 (신청 및 지급절차) ① ~ ⑨ (생략)	제6조 (신청 및 지급절차) ① ~ ⑨ (현행과 같음)
⑩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매월 14일 이내 신청인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.	⑩ ---------- 익월 ----------.
제10조(출산장려 시책 참여단체 및 사업체 등 지원) ① 군수는 지역사회의 출산장려	제10조(출산장려 시책 참여단체 및 사업체 등 지원) ①

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장려 시책에 참여한 사업체와 기관, 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거나,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.	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.
1. 인구의 날 행사	<삭 제>
2. ~ 4. (생 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